

동작구의회공고 제2019-1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2018.7.1.부터 시행되어, 2019년 기준 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저소득주민의 최저보험료가 14,700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구 조례에서는 지원대상 보험료액이 14,000원 이하로 되어 있어 지속적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저소득층 용어 순화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위한 변경 (안 제명)
- 나. 저소득층 용어 변경 및 최저보험료 정의 신설 (안 제2조)
- 다. 지원대상을 금액 기준에서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변경 (안 제3조)
- 라. 지사장에 대한 통보 의무 부과 규정 삭제 (안 제4조)
- 마. 환수규정 중 행정상 강제징수 규정 삭제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제2조 중 ““저소득층”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최저보험료”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이며”를 “지역가입자이며”로, “금액 기준 월 14,000원 이하인 세대로

서”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으로 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가구의 명단을 지사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환수 등)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u> <u>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u>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저소득층</u>”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신 설></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u> <u>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u>----- ----- -----.</p> <p>제2조(정의) ----- <u>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u>저소득주민</u>”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2. “<u>최저보험료</u>”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p>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 금액 기준 월 14,000원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 5. (생략)

제4조(대상자 결정) ① 지사의 장은 매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명단에 실린 대상자가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이 조례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이며--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
-----.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가구의 명단을 지사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환수 등)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